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검찰청

보도자료
2022. 6. 24.(금)

대변인실

전화 02-3480-2100 / 팩스 02-3480-2704

자료문의 : 공판1과
전화번호 : 02-3480-2360
주책임자 : 공판1과장

제목

2022년 5월 공판우수사례 5건 선정

- 대검찰청은, 2022년 5월 전국 검찰청에서 수행한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5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하고 격려 하였음
- 공판우수사례 선정 내역(※ 상세 내용은 별지 참조)

- ① 강간 피해자가 법정에서 강간당하지 않았다고 수사단계의 진술을 반복한 사안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위증의 대가로 3천만원을 받고 허위 증언한 사실을 규명하고, 위증범 및 위증교사범 4명 입건, 기소 [강릉지청]
- ②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단순 성매매알선이었던 것처럼 범행을 축소하여 주장한 사안에서, 효과적인 피고인 반대신문을 통해 조직적 성매매알선·강요 범행임을 밝혀내어 가중처벌 규정으로 실형(징역 2년 6월) 선고 [안산지청]
- ③ 이동 주차를 위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‘긴급피난’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 사안에서, 당시 타인이 운전할 수 있었던 사정을 밝혀 음주운전이 불가피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하고 유죄선고 [서울서부지검]
- ④ 성매매알선 범행의 공범이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위증하여, 해당 공범에 대한 관련 재판기록을 확인하고, 이를 토대로 위증 범행을 자백 받아 기소한 후, 피고인에 대한 양형 가중자료로 제출하여 엄단 [대전지검]
- ⑤ 사실혼 부부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서, 재판 받고 있는 다른 배우자를 위해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위증하여, 출장조사, 관련기록 확인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증 인지 [군산지청]

[별지 : 공판우수사례 선정 내역]

순 번	소 속	공판우수사례
	부 장	
	주임검사	
1	강릉지청 형사부	<p>[위증사범 엄단] 피해자가 법정에서 강간당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번복하자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, 휴대폰 분석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위증한 것임을 밝힌 사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강간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, 이후 법정에서 수사단계의 진술을 번복하여 강간당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사안에서, -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,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, 위증교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상호 모의한 대화내용 및 변호사사무실 사무장까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, - 위증한 피해자의 계좌 추적을 통해 범행 당일 약 4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, - 확보된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피해자가 위증의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밝히고, 위증을 교사한 피고인의 가족 및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위증교사로 입건 -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이에 가담한 피해자도 위증으로 입건, 기소하여 사법질서방해사범을 엄단한 사례
	조영희(35)	
	황호용(49)	
2	안산지청 공판부	<p>[공소유지 우수] 충실한 증인신문을 통해 조직적 범행임을 규명하고, 피고인 반대신문을 통해 피고인 스스로 조직원의 일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진술을 이끌어내어 집단 범행으로 엄단한 사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성매매강요 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조직원으로서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단순 성매매알선이었던 것처럼 범행을 축소 주장하여, -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으나 출석을 회피하는 증인에게 공판검사가 직접 출석을 설득한 후 피고인이 조직원이라는 증언을 이끌어내고, - 효과적인 피고인 반대신문을 통해 조직원 출소식·송년회 등에 각 참석한 사실, 성매매 강요 시 사용한 표현, 조직 내 후배들의 관계를 드러내는 등, -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추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법정에서 현출시켜, 피고인을 가중처벌 규정인 ‘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성매매강요죄’를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한 사례
	강민정(34)	
	박예주(43)	

순 번	소 속	공판우수사례
	부 장	
	주임검사	
3	서울서부지검 공판부	<p>[공소유지 우수] 이동 주차를 위해 음주운전한 사건에서 충실한 증인신문 및 법리 검토를 통해 긴급피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밝혀 유죄 선고받은 사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동 주차를 해달라는 항의를 받고 단거리 음주운전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교통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운전하였던 것이므로 소위 '긴급피난'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주장한 사안에서, - 피고인의 지인이 당시 현장 주변에 있었던 점에 착안하여, 반대신문을 통해 타인이 대신 운전할 수 있었다는 진술을 이끌어내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하고, - 긴급피난이 인정된 하급심 판례들과 관련 법리 및 증거관계를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여, - 피고인 스스로 해당 장소에 주차하였고,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, 주변에 운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,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처벌한 사례
	김연실(34)	
	최예원(변4)	
4	대전지검 공판부	<p>[위증사범 엄단] 성매매알선 범행의 공범이 위증하자, 해당 공범에 대한 관련 재판 기록을 확인하여, 이를 토대로 위증 범행을 자백 받아 처벌한 사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매매알선 사건의 공범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 증인의 단독범행이었다고 위증한 사안에서, - 공범이 이미 피고인과 동일업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, - 해당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함께 소위 '포주'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에도 동네 선배인 피고인을 위해 허위 증언하였다는 자백을 받아 위증 범행을 인지는 한편, - 위증 범행 관련 자료 및 공소장을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 추가양형 가중자료로 제출하여 엄단한 사례
	허성환(34)	
	김혜주(변1)	

순 번	소 속	공판우수사례
	부 장	
	주임검사	
5	군산지청 형사1부	<p>[위증사범 엄단] 보험사기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위증한 범행 적발하여 기소한 사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보험사기 사건에서, - 공판검사는 피고인 부부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확인한 뒤, - 방대한 보험사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가 타 지역 교도소로 이감되었음에도 직접 출장조사하고, 다른 공범과 피의자의 변호인을 조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한 결과, - 사실혼 부부가 제3의 공범과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,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배우자 일방이 재판 받고 있는 다른 배우자를 위해 허위 증언한 것임을 밝혀 엄단한 사례
	이완희(34)	
	전정우(변8)	